FPSB KOREA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AFPK® 자격시험 및 인증 안내

- Guede to AFPK®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AFPK® Association *Gloval excellence in financial planning*

C O N T E N T S

재무설계사(AFPK) 자격인증 개요 ····· 4
교육 ····· 4
시험 ····· 4
윤리 및 자격인증 ····· 4

1. 교육(Education) ····· 5
AFPK 교육 요건의 충족 ····· 6
AFPK 교육기관 ····· 7

2. AFPK 자격인증시험 (Examination) ····· 8
응시자격 ····· 8
시험구성 및 유형 ····· 8
시험 구성 ····· 8
시험 유형별 및 과목별 문항수 ····· 9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 10
전체합격기준 ····· 10
전체합격의 유효기간 ····· 10
부분합격기준 ····· 10
부분합격의 유효기간 ····· 10

응시원서 접수 ····· 11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료 ····· 11
AFPK 자격인증시험 일정 ····· 11
응시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 12
AFPK 자격인증시험 장소 ····· 12
기타 사항 ····· 12
취소 및 환불 ····· 13
기타 응시료의 환불 ····· 13
시험 유의사항 ····· 14
지참물 ····· 14
부정/부당행위 ····· 14
응시 결과 발표 ····· 16
재점검 요구 및 이의 제기 ····· 16
개인정보의 보호 방침 및 절차 ····· 17

4. 윤리(Ethics) ····· 18
자격인증에 대한 결격사유 ····· 19
자격인증신청 ····· 20
사진제출 안내 ····· 21
인증 전 계속교육학점의 요구 ····· 21
자격인증의 갱신 ····· 22
AFPK 자격표장의 사용 권한 ····· 23
온라인상의 자료 제공 ····· 23

부록 A. AFPK 지정교육기관 ····· 24

재무설계사(AFPK) 자격인증 개요

AFPK 자격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 "3E"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교육 (Education)
- 시험 (Examination)
- 윤리 (Ethics)

본 안내서는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AFPK 자격인증 요건은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일 또는 자격인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격인증요건이 적용됩니다.

교육

AFPK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FPSB의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과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6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

AFPK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AFPK 교육 부분면제자에 대해서는 6쪽의 AFPK 교육요건의 충족 참조) AFPK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AFPK 자격인증시험에서는 재무설계 핵심항목을 근거로 하여 응시자의 재무설계지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시험요건과 교육요건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AFPK 자격인증자가 전문적인 재무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AFPK 자격인증시험에 대해서는 8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리 및 자격인증

교육, 시험 요건이 충족되면 AFPK 자격인증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AFPK 자격인증을 신청 하게 됩니다. AFPK 자격인증서류에는 AFPK 윤리규정준수서약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AFPK 자격인증신청자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피고 여부, 업계자율기관 또는 소속직장이나 단체 등으로부터의 징계 여부를 밝히고 자격인증의 유지갱신 및 윤리관련규정의 준수,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공개, 징계사유 및 징계의 공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1. 교육(Education)

AFPK 자격인증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응시자는 재무설계와 관련된 핵심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 핵심항목은 크게 8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8가지 분야는 다시 아래와 같이 모듈 1과 모듈 2로 나뉩니다.

1) 모듈 1
- 재무설계 개론
- 재무설계 직업윤리
- 은퇴설계
- 부동산설계
- 상속설계

2) 모듈 2
-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 투자설계
- 세금설계

AFPK 교육 요건의 충족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 예정자는 한국FPSB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AFPK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단, 전문자격증이나 기타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교육요건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FPK 교육 전 과정 면제

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자
②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③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④ 보험계리사
⑤ 감정평가사
⑥ 경영학 석사
⑦ 경제학 석사
⑧ 재무설계학 석사

2) AFPK 교육 일부 면제

대상자격증	교육면제과목
종합자산관리사	모듈 2
투자자산운용사	모듈 2
자산관리사	모듈 2
손해사정사	보험설계
보험중개사	보험설계
국제투자분석사	투자설계
운용전문인력	투자설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설계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설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설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설계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투자설계
공인중개사	부동산설계

※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응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일 현재 해당자의 자격인증, 학위 또는 자격시험 합격사실이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징계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FPK 교육기관

AFPK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인터넷, 우편통신)의 형태로 제공 됩니다. 집합교육은 최소 80시간, 원격교육은 최소 12주 이상의 기간동안 88시간 이상을 응시원서접수 시작전날까지 수료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개설문의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A. AFPK 지정교육기관] 참고

2. AFPK 자격인증시험(Examination)

AFPK 자격인증시험은 응시자가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설계지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응시자격

한국FPSB에 등록된 AFPK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교육요건이 부분 면제되는 자격보유자는 나머지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AFPK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6쪽의 AFPK 교육요건의 충족, 7쪽의 한국FPSB의 AFPK 지정교육기관 참조)

시험구성 및 유형

AFPK 자격인증시험은 모두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3월, 8월, 12월에 시행되며 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시험일정은 한국FPSB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FPSB 웹사이트(http://www.fpsbkorea.org)에서 시험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구성

■ 일요일
- 제 1교시 (모듈 1) : 오전 9:00 ~ 오전 10:50 100 문항
- 휴 식 : 오전 10:50 ~ 오전 11:20
- 제 2교시 (모듈 2) : 오전 11:20 ~ 오후 1:00 90 문항

■ 토요일
- 제 1교시 (모듈 1) : 오후 2:00 ~ 오후 3:50 100 문항
- 휴 식 : 오후 3:50 ~ 오후 4:20
- 제 2교시 (모듈 2) : 오후 4:20 ~ 오후 6:00 90 문항

시험 유형별 및 과목별 문항수

(1) 지식형

시험 과목	시험 문항수
모듈 1	
재무설계 개론	15
재무설계 직업윤리	5
은퇴설계	30
부동산 설계	25
상속설계	25
모듈 2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30
투자설계	30
세금설계	30
합 계	190 문항

※ 위의 내용은 한국FPSB 시험분과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AFPK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은 모듈1과 모듈2 시험 중 하나에만 합격하는 부분합격과 모듈1과 모듈2 시험 모두를 합격하는 전체합격으로 나뉩니다. 부분합격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합격일 이후 연속되는 다음 4회의 AFPK 자격인증시험까지 합격사실이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나머지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AFPK 자격인증시험에 전체합격하게 됩니다. 만일 부분합격 이후 연속되는 다음 4회의 AFPK 자격인증시험에서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부분합격 사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AFPK 자격인증시험에 전체합격한 경우에만 AFPK 자격인증의 시험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전체합격기준

모듈1과 모듈2 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 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각 과목에 대하여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 전체합격의 유효기간

AFPK 자격인증시험의 전체합격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AFPK 자격인증은 합격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AFPK 자격인증시험을 다시 치르셔야 합니다. (참고. 29쪽의 “인증전 계속교육학점의 요구”)

부분합격기준

하나의 모듈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 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해당 모듈의 시험과목별로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 부분합격의 유효기간

시험유형별 부분합격은 합격한 사실만 인정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부분합격의 유효기간은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다음 4회의 AFPK 자격인증시험의 응시까지입니다. 시험 일정 및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는 한국FPSB 웹사이트 (http://www.fpsbkorea. 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방법에는 인터넷 접수와 우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수: 한국FPSB 웹사이트 http://www.fpsbkorea.org

-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성 후 『마이페이지』에서 원서접수 가능하며, 응시료 결제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응시료 결제는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계좌이체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결제 시에는 각 카드사에서 안전결제서비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FPK 교육과정 요건이 부분 또는 전체 면제되는 전문자격보유자(6쪽의 AFPK 교육요건의 충족 참고)인 경우, 해당 전문자격증 사본을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팩스 : 02)6008-2160
- 파일 업로드 (www.fpsbkorea.org)

(2) 우편 접수: 한국FPSB 웹사이트 (http://www.fpsbkorea.org)의 [자료실]에서 'AFPK자격시험응시원서' 다운로드

- 시험응시료는 무통장 입금해야하며 응시원서 작성 후 응시료 납입 증명서사본과 사진1매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는 우편접수기간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서 한국FPSB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료 납입계좌 : 하나은행 106-91006-65904 예금주. 한국 FPSB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료

- 전체(모듈1과 모듈2)응시료 **66,000** 원(부가세 포함)
- 모듈(모듈1 또는 모듈2)응시료 **39,600** 원(부가세 포함)

AFPK 자격인증시험 일정

- 한국FPSB 웹사이트(www.fpsbkorea.org)의 [시험]에서 시험일정 참조

응시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한국FPSB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확인 가능합니다. 단, 우편접수시 서류제출 후 3~4일 이후에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기간(http://www.fpsbkorea.org에서 일정 참고) 동안 한국FPSB 웹사이트에 로그인후 수험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험표에는 고사장(약도 포함), 고사실, 수험번호, 시험유의사항, 지참물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AFPK 자격인증시험 장소

현재 AFPK 자격인증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사장에 대한 안내는 매 시험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특별한 사유(장애, 임신 등)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FPSB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ssong@fpsbkorea.org

취소 및 환불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취소기간 내에 한국FPSB 웹사이트(http://www.fpsbkorea.org)에 로그인 후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료 100% 환불
  환불방법: 카드-승인취소, 계좌이체-지정된 계좌로 응시료 100% 입금

- 응시료 50% 환불
  환불방법 : 카드, 계좌이체 모두 지정된 계좌로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응시료의 50% 입금

※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취소기간은 http://www.fpsbkorea.org에서 「AFPK 자격인증시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응시료의 환불

응시자의 응급의료상황 발생시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시험종료 후 10일 내에 취소 및 환불신청서와 함께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한국FPSB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가 100% 환불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로는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소 및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FPSB 웹사이트 접속 후 『자료실』에서
  "자격시험 기간 외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처 : FAX 02)6008-2160

시험 유의사항

응시자는 해당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참물

- 수험표
- 규정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단, 식별가능한 사진이 부착되어야 함
- 계산기
  휴렛패커드사 10B, 10B Ⅱ, 12C, 12C Platinum, 17B Ⅱ, 17B Ⅱ PLUS
  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 BA Ⅱ PLUS, Professional
  일반계산기- 단,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 및 공학용 계산기 등은 지참 불가
- 컴퓨터용 사인펜 (기타의 필기도구 사용시 답안지오류로 인해 0점 처리 됩니다)
- 수정테이프 (이중 마킹, 오기 등은 오답처리 됩니다)

부정/부당 행위

대리응시, 문제지 또는 출제문제의 유출 및 이의 시도,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의 불응, 시험진행방해행위,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기타 한국FPSB가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사실을 취소하고, 당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부정/부당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세부처리 지침]

한국FPSB에서는 대리응시, 문제지 또는 출제문제의 유출 및 이의 시도,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의 불응, 시험진행방해행위,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기타 한국FPSB가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사실을 취소하고, 당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3년 동안 AFPK 인증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부정 / 부당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유형	세부처리기준	
	최소(경미한 행위)	최대(중대한 행위)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2. 시험 중 컨닝용 책자 또는 메모 등을 소지하거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및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베끼거나 보여주길 강요하는 행위	응시제한 1년	응시제한 5년
3.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4. 중도 퇴실이 허용되기 전에 퇴실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5. 휴대가 금지된 물품(휴대폰을 포함한 각종 통신장비, 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부착된 전자기기 및 시계 등)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판단되는 경우)1)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6.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장 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7.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8.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내용 및 시험지 일부 또는 전체를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려는 행위2)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9.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고 감독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10. 감독자 또는 고사장 감독책임자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기타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5년

(주1)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2) 본인의 답을 필사하거나 메모가 키워드 10자 내외로 경미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를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3) 자격시험관리규정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징계조치에 추가로 민사상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응시 결과 발표

AFPK 자격인증시험이 끝난 후 약 3주 후 AFPK 자격인증시험 응시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후 당해 시험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응시자의 시험 성취도를 도표로 나타낸 시험영역별 문항분석표가 제공됩니다. 응시자의 득점점수와 시험문제는 공개되지 않으며,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합격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재점검 요구 및 이의 제기

문제의 유출방지 및 보안을 위하여, 시험지 및 답안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격판정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FPSB에 답안지 재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한국FPSB에서 답안지 재점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만일, 재점검 결과 한국FPSB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FPSB는 재점검 신청자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응시자 전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이 밖에 시험 문제 및 기타 시험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FPSB로 의견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시험분과위원회가 검토를 하며,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시험분과위원회가 인정하고 이를 한국FPSB가 승인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FPSB의 1:1질의응답 또는 이메일 접수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연락전화번호
2. 이의신청의 요지
3. 신청인의 의견 및 희망사항
4. 신청인의 서명

- 한국FPSB 이메일: info@fpsbkorea.org

개인정보의 보호 방침 및 절차

자격시험응시자의 개인정보 및 자격인증자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해당 개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가 소속 직원 중 자격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명단과 자격인증자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숫자(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만을 제공한다.
2) 지정교육기관이 학사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수강생에 한하여 응시자 및 합격자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자의 인적사항만 제공한다.
3) 징계규정에 따른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에 대한 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 잠정적 자격정지 및 등록전 유자격자에 대한 승인정지 또는 승인거부의 경우, 해당개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내용과 사유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한국FPSB의 웹사이트나 저널 및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다.
4)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정보를 동의하는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시험의 개인별 취득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윤리(Ethics)

AFPK 자격인증에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윤리요건의 충족입니다. AFPK 자격인증시 AFPK 자격인증신청자는 AFPK 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FPSB의 윤리규정과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하고 한국FPSB의 징계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AFPK 자격인증신청자가 개인재무설계업무 수행 시 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며 최고의 윤리 및 전문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했음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AFPK 자격인증을 받거나 매 2년 마다 AFPK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 통하여 형사소송, 민사소송, 업계 자율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조사, 수사 또는 소송에 관련된 적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한국FPSB의 징계규정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윤리규정준수서약서상에 위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 관련이 있었거나 또는 한국FPSB의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에 위반되는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FPSB가 발견하는 경우, 해당 AFPK 자격인증신청은 한국FPSB 인증분과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인 경우, 한국FPSB는 해당 AFPK 자격인증신청자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AFPK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에 관련된 검토는 모두 한국FPSB의 징계규정에 따라 행해집니다.

자격인증에 대한 결격사유

자격신청인이 형사상 처벌 또는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 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FPK자격인증자 또는 CFP자격인증자가 되지 못하며, 자격인증자가 된 이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사용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또는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자
10)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
12) 한국FPSB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자격인증신청

AFPK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격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AFPK 자격인증 신청서류를 작성 · 제출하고 라이센스비를 납부함으로써 AFPK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접수

한국FPSB 웹사이트(http://www.fpsbkorea.org)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자격인증신청 버튼을 클릭 후 나와있는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마지막 결제까지 완료하면 인증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인회원 및 대학생의 경우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또는 재학 · 휴학증명서를 파일업로드 또는 팩스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FAX 02)6008-2160

2) 우편접수

① 자격인증신청서류의 제출

- AFPK 자격인증신청서
- AFPK 윤리규정준수서약서
- 사진

② 라이센스비 100,000원 납부 (동명이인 구별을 위하여 납부증빙 사본 첨부 요)

☞ 납부계좌 : 하나은행 106-910006-59704 예금주 : 한국FPSB

③ 제출처 :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AFPK 자격인증담당자 앞

인증서 발급안내

매월 접수 된 인증신청은 말일에 일괄적으로 인증처리가 완료되며, 인증신청한 다음 달 1일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인증이 완료된 인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등록한 우편물 수령처로 택배 발송 합니다.

• 인증 유효기간 :2년

인증 전 계속교육학점의 요구

AFPK 자격인증의 취득은 AFPK 자격인증시험 합격 후 최장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AFPK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AFPK 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에 대해 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여야만 AFPK 자격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교육학점은 경과된 달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당 계속교육 0.83학점의 비율로 기간 계산되며 (소수점 이하 절상), 합격후 2년 경과 시 윤리교육 2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격인증 신청시기	계속교육요건	학점인정기간
합격 후 1년 이내	유예	–
1년 경과 2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0.83	합격이후부터 인증신청전까지
2년 경과 3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0.83) + 윤리 2학점	인증신청시점에서 최근 2년 이내

※ 계속교육학점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한국FPSB웹사이트(www.fpsbkorea.org)의 [인증] → [계속교육학점]에서 확인바랍니다.

자격인증갱신

AFPK 자격인증자는 AFPK 표장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AFPK 표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FPSB의 AFPK 자격갱신규정에 따라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AFPK 자격인증의 갱신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 2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과 1개월 전 2차례 갱신안내가 이루어지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AFPK 자격인증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휴대폰 문자를 통한 갱신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격갱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갱신서류의 제출
- AFPK 자격갱신신청서
- AFPK 윤리규정준수서약서

2)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 한국FPSB가 승인한 윤리과정 2학점을 포함하여 총 20학점

3) 라이센스비 100,000원 납부

※ AFPK자격갱신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AFPK자격갱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FPK 자격표장의 사용 권한

AFPK 자격표장은 한국FPSB가 독점적이고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한국FPSB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효한 AFPK 자격인증자만이 AFPK 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FPSB는 AFPK 자격표장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AFPK 자격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합니다. AFPK 자격인증 최초 신청 후 인증서를 받기 전에 미리 AFPK 자격표장을 사용하거나 기타 한국FPSB가 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AFPK 자격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자료 제공

한국FPSB의 웹사이트 http://www.fpsbkorea.org에서는 AFPK 자격인증 및 갱신에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록A. AFPK 지정교육기관

- (주)미래이코노믹(구, 윈에듀플러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우림 e-biz Center 301호
  TEL: 1599-9555 FAX: 02-2164-8659
  http://www.winfn.com ask@winfn.com

- (주)멀티캠퍼스
  서울시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6층
  TEL: 1544-9001 FAX: 02-6262-9124~5
  http://www.credufn.com webmaster@credufn.com

- 해커스패스 ((주)챔프스터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6-15번지 현대성우빌딩 203호
  TEL: 02-566-5800 FAX: 02-554-0551
  http://fn.pass.com fnhelp@pass.com

- (주)유비온 (와우패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대륭포스트타워3차 6층 601호
  TEL: 1600-0072 FAX: 02-3782-8890
  http://www.wowpass.com woomk@ubion.co.kr

- (주)이패스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길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TEL: 1600-0522
  http://www.epasskorea.com

- (주)토마토패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TEL: 02-2128-3336 FAX: 02-2128-3851
  http://www.tomatopass.com pass@etomato.com

- 삼성생명보험(주)(삼성생명 자사직원만 교육)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100-716)
  TEL: 02-751-8379(임직원), 031-260-7012(컨설턴트) FAX: 02-751-8499
  http://www.samsunglife.com exor@samsung.co.kr

- 메트라이프생명보험(메트라이프생명보험 자사직원만 교육)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번지 성원빌딩(135-090)
  TEL: 02-3469-9600 FAX: 02-3469-9696
  http://www.metlife.co.kr soyeunfa@metlife.co.kr

- 동의대학교(금융보험학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TEL: 051-890-2045
  http://banin.deu.ac.kr
  단, 동의대학교 재학생이 2006년 1학기부터 개설된 [금융재무설계 Ⅰ, Ⅱ]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서울대학교(소비자아동학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TEL: 02-880-6821 FAX: 02-871-2506
  http://plaza.snu.ac.kr/~ccs/
  단,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2007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재무설계], [소비자포트폴리오] 과정을 2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인천대학교(소비자아동학부)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번지
  TEL: 032-835-8250 FAX: 032-835-8357
  http://ccs.incheon.ac.kr
  단, 인천대학교 재학생이 2007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가계재무설계], [가계저축과 투자], [가계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과정을 3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상명대학교(소비자거주학과)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TEL: 02-2287-5198 FAX: 02-2287-0071
  http://www.smu.ac.kr
  단, 상명대 재학생이 2007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재무설계], [자산관리론] 과정을 2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영남대학교(경제금융학부)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번지
  TEL: 053-810-4651
  http://econ.yu.ac.kr
  단, 영남대 재학생이 2007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경제금융학 특별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성균관대학교(소비자가족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TEL: 02-760-0507
  http://wiz.skku.edu/skkucfs/
  단, 성균관대 재학생이 2008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자산관리론], [보험과은퇴설계], [재무설계실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인하대학교(소비자아동학과)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TEL: 032-860-8110 FAX: 032-865-5228

http://consumerchi.inha.ac.kr
단, 인하대 재학생이 2008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재무설계], [가계의 투자와 보험], [자산운용 및 전략](2011년 이전), [세금과 상속설계](2012년 이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한림대학교(재무금융학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TEL: 033-248-1850 FAX: 033-256-3424
  http://finance.hallym.ac.kr
  단, 한림대 재학생이 2008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노후설계론], [은퇴설계론]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성신여자대학교(생활문화소비자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길 54-7
  TEL: 02-920-7114
  http://www.sungshin.ac.kr/family/html/main/index.html
  단, 성신여대 재학생이 2008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 재무설계], [가계투자와 자산관리]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계명대학교(소비자정보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TEL: 053-580-5485
  http://cis.kmu.ac.kr
  단, 계명대 재학생이 2008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개인재무설계기초], [보험및위험관리], [증권투자실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건양대학교(금융.국제학과)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TEL: 041-730-5519
  http://fin.konyang.ac.kr
  단, 건양대 재학생이 2009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자산설계 Ⅰ], [자산설계 Ⅱ]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충북대학교(소비자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TEL: 043-261-2744
  http://consumer.cbnu.ac.kr
  단, 충북대 재학생이 2009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 재무설계], [자산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 및 상속설계], [부동산 투자전략]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건국대학교(소비자정보학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화양동 1번지
  TEL: 02-450-3773
  http://coinfo.konkuk.ac.kr

단, 건국대 재학생이 2010년도 부터 개설된 [소비자재무론], [소비자재무사례분석론]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대구대학교(금융보험학과)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TEL: 053-850-6260 FAX: 053-850-6269
  http://bogum.daegu.ac.kr
  단, 대구대 재학생이 2010년도 부터 개설된 [개인재무설계 Ⅰ], [개인재무설계 Ⅱ]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서울사이버대학교(금융보험학, 부동산학과)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TEL: 02-944-5088
  http://money.iscu.ac.kr
  단,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2010년도 부터 개설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4374 FAX: 02-3277-4010
  http://home.ewha.ac.kr/~consume/
  단, 이화여대 재학생이 2010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 재정설계], [소비자 투자와 보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열린사이버대학교(금융자산관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허브빌딩 102동
  TEL: 02-2197-4133 FAX: 02-2197-4114
  http://www.ocu.ac.kr
  단, 열린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2010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보험과 재무설계], [세금설계], [은퇴자산설계론], [금융부동산투자론]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서울디지털대학교(금융보험학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02-2128-3058
  http://insurance.sdu.ac.kr
  단, 서울디지털대학교 재학생이 2010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파이낸셜플래닝 개론], [보험과 은퇴설계], [부동산설계와 투자설계], [세금과 상속설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국민대학교(경영학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TEL: 02-910-4518, 4151
  http://biz.kookmin.ac.kr/site/speciality/administration/intro.htm
  단, 국민대학교 재학생이 2011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2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인제대학교(생활상담복지학부)
  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
  TEL: 055-320-3240 FAX: 055-321-9550
  http://homepage.inje.ac.kr/~consumer/
  단, 인제대학교 재학생이 2011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 재무설계](2011년이전), [은퇴자산설계](2012년 이후), [소비자 투자와 보험] 과정을 2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한신대학교(경영학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TEL: 031-379-0570
  http://www.hs.ac.kr/
  단, 한신대학교 재학생이 2011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가계재무설계], [투자론] 과정을 2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자산관리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02-3299-8636 FAX: 02-3299-8889
  http://www.khcu.ac.kr/am/
  단,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2011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자산관리론], [보험설계론], [부동산학원론], [은퇴자산설계], [조세전략론] 과정을 5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전주대학교(금융경영학과)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TEL: 063-220-3052
  http://business.jj.ac.kr/
  단, 전주대학교 재학생이 2011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2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전남대학교(생활환경복지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TEL: 062-530-1320 FAX: 062-530-1329
  http://www.jnuwelfare.com/
  단, 전남대 재학생이 2012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가계경제론], [소비자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과정을 3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경북대학교(경영학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TEL: 053-950-5417, 5876 FAX: 053-950-6247
  http://biz.knu.ac.kr/
  단, 경북대 재학생이 2012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자산운용] 과정을 2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울산대학교(아동가정복지학과)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TEL: 052-259-2361 FAX: 052-259-1699
  http://www.ulsan.ac.kr/
  단, 울산대학교 재학생이 2012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가계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건양사이버대학교(금융부동산학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TEL: 1899-3330 FAX: 042-600-6519
  http://www.kycu.ac.kr/
  단,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2012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지정과목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제주대학교(아동생활복지학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TEL: 064-754-3570 FAX: 064-756-3562
  http://www.jejunu.ac.kr/
  단, 제주대학교 재학생이 2012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 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가계경제론]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숭실대학교(금융학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9
  TEL: 02-828-7385 FAX: 02-828-7384
  http://www.ssu.ac.kr/
  단, 숭실대학교 재학생이 2012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자산관리], [부동산금융]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충남대학교(소비자생활정보학과)
  대전 유성구 궁동 220번지
  TEL: 042-821-6841
  http://www.cnu.ac.kr/
  단, 충남대 재학생이 2012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가계재무관리], [가계투자와 보험,은퇴설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서원대학교(금융보험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TEL: 043-299-8620
  http://www.seowon.ac.kr/
  단, 서원대 재학생이 2013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리스크관리보험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TEL: 041-550-5320
  http://www.smu.ac.kr/
  단,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재학생이 2013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개인자산관리](2013년 이전), [금융서비스마케팅], [재무설계 II](2014년 이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나사렛대학교(부동산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041-570-7700
  http://www.kornu.ac.kr/
  단, 나사렛대학교 재학생이 2014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경상대학교(경영학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72-0114
  http://www.gnu.ac.kr/
  단, 경상대학교 재학생이 2014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가족소비자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TEL: 053-850-3114
  http://www.cu.ac.kr/
  단,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생이 2014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소비자재무설계], [은퇴및상속설계], [투자와보험]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배재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TEL: 042-520-5114
  http://www.pcu.ac.kr/
  단, 배재대학교 재학생이 2014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영진전문대학(금융회계전공 금융실무반)
  대구시 북구 복현로 35
  TEL: 053-940-5114
  http://www.yjc.ac.kr/
  단, 영진전문대학 재학생이 2014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숙명여자대학교(소비자경제학과)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TEL: 02-710-9114
http://www.sookmyung.ac.kr/
단,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재학생이 2014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광운대학교(경영학부)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02-940-5302
http://biz.kw.ac.kr/
단,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재학생이 2016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Ⅰ], [재무설계 Ⅱ]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서경대학교(금융정보공학과)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TEL: 02-940-7766
http://fi.skuniv.ac.kr/
단, 서경대학교 재학생이 2016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재무설계], [자산관리]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대학교에서 제공되는 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위에 명시된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과정 이수 학점이 C이상이어야 합니다.

FPSB KOREA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2동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http://www.fpsbkorea.org / info@fpkorea.com